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01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검토보고서



2024. 2.

기획재경위원회 전문위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검토보고서

2024. 2. 15.

기획재경위원회

### 1. 검토과정

- 안건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발의자: 박왕규 의원 등 5명(김정희, 서민우, 이영빈, 이진환)
- 발의일자: 2024. 2. 2.(금)
- 회부일자: 2024. 2. 2.(금)
- 검토기간: 2024. 2. 2.(금) ~ 2. 8.(목)

### 2. 제안이유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달서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 구청장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안 제5조)
- 구청장이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사업 등을 총괄하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임명하도록 함.(안 제6조)
- 구청장이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데이터를 활용한 주민서비스의 발굴 및 개선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구청장은 제공받은 데이터 및 달서구가 생성·보유·관리 중인 데이터가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함.(안 제9조)

-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11조)
-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4. 참고사항(관계법령 등)

- 관계법령: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비용추계서: 필요시 예산 조치
- 입법예고(2024. 2. 2. ~ 2. 13.)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데이터의 활용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자원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우리구 데이터의 효율적인 제공 · 연계 · 공동활용으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통한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신뢰성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매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데이터 분석 · 제공, 활성화 교육 · 포럼 등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업무 담당 국장을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으로 임명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고,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생성 · 수집 데이터의 부서별 자료제공 및 협력, 데이터를 활용한 주민서비스 발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 수립, 데이터기반행정의 추진현황, 성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데이터 정책 관련, 민·관·학 등 협력체계 구축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사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공공데이터의 제공·연계·활용을 통한 다양한 경제적 가치 창출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 안전성 관리에 각별히 주의가 요구되며 상위법령 위반사항이 없어 별다른 이견이 없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 행정안전부 2022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결과 ‘미흡’  
-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달서구 포함 125개(55.3%) 미흡

## 【관 계 법령】

###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데이터의 최신성·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

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법령·제도의 개선
3. 주요 분야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대책
4. 데이터의 연계·제공 및 공동활용에 필요한 체계 구축
5. 데이터의 연계·제공 및 공동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7.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문계획의 작성 지침을 정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 추진이 다른 기관의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
  2.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
  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4. 제1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
  5.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협력 방안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공받은 데이터에 대한 관리) ① 데이터를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데이터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② 데이터를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보유기간의 경과, 데이터 이용 목적의 달성을 등으로 데이터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데이터를 파기하여야 하며, 데이터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되거나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를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제공받은 데이터가 위조·변조·

훼손 또는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① 공공기관의 장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통합·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관별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종합하여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연계 및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
2. 데이터관계도 등 연관 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 탐색
3. 데이터 유형별 저장 체계
4.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정책 수립·의사결정 지원 및 이력 관리
5.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수집·관리되는 데이터의 연계 및 공동 활용
6. 그 밖에 데이터의 제공·연계 및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공공기관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 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제공·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 제1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제20조(데이터분석센터) ①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의 분석등을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데이터의 분석등을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이하 “통합분석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여러 기관과 관련된 주요 현안의 해결 및 국정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 분석등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

## 는 사항

2. 공공기관 간 데이터 분석등의 협업이 필요하여 통합분석센터에 지원을 요청한 사항
3. 공공기관이 소관 분야 데이터 분석등을 위하여 통합분석센터에 지원을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데이터 분석등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공공기관에 소관 데이터(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관 데이터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공한 공공기관의 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데이터 분석등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분석센터의 데이터 분석등의 결과를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데이터 분석등의 결과를 소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등을 위하여 데이터분석센터 및 통합분석센터에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공공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분석센터 및 통합분석센터 내에 수집되거나 저장된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결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데이터분석센터 및 통합분석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

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데이터 연계·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그 성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이나 부서, 공무원·직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관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통합·연계하여 관리하는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임명요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해당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이 나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2. 시·도 및 시·도 교육청: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시·군·구: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4. 그 밖의 공공기관: 해당 공공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의장을 말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